

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4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4. 29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4. 29

(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종합민원과장 배 상 국

나. 제정사유

- 최근 인감관련 사고로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인감공무원(대직자 포함)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(안 제3조 제1항)
-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.(안 제3조 제2항)
-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.(안 제5조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최근 인감관련 사고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,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. 내용상 별다른 의견없음.
-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사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안

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도 보 사 회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상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차 본회의

제2차 본회의

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